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제도 관련 Q&A

<대상>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업종, 직종 및 업무에 상관없이 야간 시간에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 단시간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시간을 충족하면 검진대상이 됨

Q1)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대상 직종은 어떻게 되나요?

- 야간작업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직종은?
- 특수검진을 받아야 하는 야간작업 근로자의 경우 사무종사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 편의점, 패스트푸드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야간작업 특수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 야간작업 범위(감시단속적 작업, 사우나 업종도 해당이 되는지, 제조업체만 해당이 되는지)

☞ 업종 및 직종에 상관없이 야간시간에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작업시간에 해당되면 실시하여야 합니다.

Q2) 근로자가 스스로 업무 마무리를 위해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 야간작업을 회사 스케줄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스스로 업무 마무리 등을 이유로 야간작업을 연 48회, 연 720시간 이상 수행하였을 경우도 해당되는지?

☞ 근로자 스스로 업무 마무리를 위해 야간작업을 하였더라도 업무와

연관하여 지속적으로 야간작업을 한 시간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작업시간에 해당된다면 실시하여야 합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 야간작업(2종) [시행규칙 제98조 제2호, 별표 12의2]

- 가.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Q3)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 야간작업: 몇시간 이상, 월 몇회, 몇시부터 몇시가 야간작업인요?
- 특수검진을 받아야 하는 야간작업 근로자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 특수검진을 받아야 하는 야간작업의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야간작업 근로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근무시간, 교대주기(일, 주, 월 또는 몇 개월 단위일 경우) 및 월 2~3일 작업 등))
- 야간작업 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2교대 등 작업을 주·야 순환하는 경우에도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 평소에는 주간 근무하다가 어찌다가 일주일에 한 번 야간작업을 하는데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 해당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작업시간에 해당되면 실시하여야 합니다.

- ① 6개월간 작업한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6개월간 24회이상, 12개월간 48회이상)

- ②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6개월간 360시간이상, 12개월간 720시간이상)

Q4) 불규칙한 경우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적용 관련 질의①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작업 실시

(단위: 회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갑	4	6	3	5	4	2	4	4	4	4	5	7	52
을	3	5	4	6	2	3	4	3	7	6	3	6	52

- 상기 도표에서 예1)과 예2) 모두 야간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 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 갑의 경우 6개월간(1~6월) 작업한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6개월간 24회이상) 수행하였으므로 대상이 됩니다.

- 다만, 을의 경우에는 1~6월까지 작업한 시간이 23회로 건강진단 대상시간이 부족하나, 7월(2~7월)에는 6개월간 누적횟수가 24회가 되므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대상이 됩니다.
- 불규칙적인 경우 누적된 야간작업시간을 토대로 건강진단대상을 판단하게 되므로 건강진단 시기는 “야간작업 대상을 확인한 달로부터 다음 달이내” 실시토록 합니다.

Q5) 불규칙한 경우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적용 관련 질의②

○ 업무특성상 연간 1~2개월만 월 평균 60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실시하고 연간 720시간 미만인 경우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 업무특성상 연간 1~2개월만 1개월에 4회 이상 야간작업을 실시하고 연간 48회 미만인 경우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 야간작업이 불규칙한 경우 근로자가 작업에 배치된 날로부터 6개월

간 근무한 야간작업 시간을 토대로 대상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해당 업무 특성상 연간 1~2개월만 야간작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작업 배치한 날로부터 6개월간 누적된 야간작업 시간이 특수건강진단 대상(시행규칙 별표 12의 2의 4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 배치 후 첫 번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배치후 첫 번째 건강진단을 실시한 이후 1년간 누적된 야간작업시간이 720시간 또는 48회이상 되지 않으면 실시하지 않습니다.

Q6)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적용 관련 질의③

- 특검의 대상이 되는 “야간작업”의 정의에서 야간작업 시간의 범위에 반드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연의 업무(배달, 조리 등)를 위한 대기, 준비 시간 등 모든 시간을 포함하는 지
※ 전형적인 제조업이 아닌 그 밖의 업종(음식및요식업, 건설업, 경비업(?) 등)에서 해석의 논란예상

☞ 야간작업이라 함은 야간시간에 근로를 하는 것으로서 감시작업이나 대기, 준비 등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해당되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에 포함하게 됩니다.

<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 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시행규칙 제98조 및 제99조, 별표 12의 3]
 - 배치전
 - 배치후 첫 번째: 6개월 이내
 - 주기*: 12개월
- * 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가능

Q7) 배치전 건강진단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 배치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배치가 되지 않나요? 그러면 채용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채용이 거부되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오히려 불리하지 않나요?

☞ 기존 특수건강진단과 마찬가지로 배치전 건강진단결과 의사가 건강 관리구분 및 업무적합성여부 실시하여 근로자가 야간작업으로 인해 건강상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야간작업 배치시 고위험군) 일부 제한될 수도 있으나

- 이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영향이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 만약 근로자가 배치전 건강진단결과 기존 질환(고혈압, 당뇨 등)이 있더라도 업무적합성 평가시 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야간작업 배치시 고위험군 》

- ① 간질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는 근로자
- ② 불안정 협심증(Unstable angina) 또는 심근경색증 병력이 있는 관상동맥질환자
- ③ 스테로이드치료에 의존하는 천식 환자
- ④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
- ⑤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
- ⑥ 교대작업으로 인하여 약물치료가 어려운 환자(예: 기관지 확장제 치료 근로자)
- ⑦ 반복성 위궤양 환자
- ⑧ 증상이 심한 과민성 대장증후군(Irritable bowel syndrome)
- ⑨ 만성 우울증 환자
- ⑩ 교대제 부적응 경력이 있는 근로자

▶ 출처: 교대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KOSHA GUIDE H-22-2011)

Q8) 야간작업이 불규칙한 경우 배치전 건강진단 적용관련 질의

- 야간작업이 불규칙적일 경우 배치전 검진 시기를 언제로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처음 배치시에는 특수검진 대상 기준인 야간작업이 아닌 불규칙 야간작업이었으나 6개월 이후 확인해보니 특수검진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한시적으로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 기타 유해인자인 경우 정기적으로 노출되지 않더라도 노출되는 경우에는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기존 유해인자인 경우 배치전 검진 대상자가 바로 확인이 가능하나 야간작업의 경우 시간, 회수 개념을 적용하므로 사전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 됨, 따라서 야간작업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 검진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야간작업이 불규칙하여 6개월이 지난 후에 확인 가능한 경우는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해당 업무가 불규칙하여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6개월간 업무를 한 후에 대상여부를 판단하므로 배치전 건강진단이 아닌 배치후 첫 번째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됩니다.

Q9) 6개월미만 일용직 근로자의 배치전 건강진단 적용관련 질의

- 일용직근로자를 채용하여 6개월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1개월에 4회이상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 또는 6개월 미만에서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의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대상인지요?

☞ 해당 업무의 근로시간이 상시적으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단기간 일용직근로자라 하더라도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업무가 불규칙하여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여부를 6개월 근무 후 판단할 경우에는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

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Q10)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다른 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과 동시에 실시 관련 질의

○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야간작업 근로자는 취급물질에 대한 특수건강진단과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동시에 받는 것인가요?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시 다른 유해인자의 특수건강진단 주기와 중복될 경우에는 동시에 실시가능합니다.

Q11)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과 동시에 실시 관련 질의

○ 당해 연도에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과 일반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나요?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1차 검사항목 중 임상검사는 일반건강진단항목과 중복되므로 일반건강진단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 별도로 실시할 수 있으며

- 만약 해당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국가암검진대상(위암, 유방암)인 경우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Q12) 기존 야간작업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적용관련 질의

○ 기존 야간작업자들의 경우 야간작업 건강진단 주기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이 규칙 시행일 이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최초의 진단을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며, 이후에는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검사항목이 일반건강진단과 중복되는 항목이 많아 당해년도 일반건강진단과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1년간의 경과규정을 둠

- 시행일 이후 부터는 근로자를 야간작업에 배치하려는 경우 배치 전, 배치후 첫 번째(6개월 이내), 12개월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행시기>

Q13)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언제 시행관련 질의

- 야간작업자 특수건강진단은 언제 시행되나요?
- 야간작업은 특수건강진단은 언제까지 시행하여야 하나요?

☞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 3년에 걸쳐 전사업장으로 적용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4년 1월 1일
2.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5년 1월 1일
3.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6년 1월 1일

※ 규모별 적용 기준은 단위사업장으로 적용함

- 상시근로자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Q14)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관련 규모별 적용 질의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시행일이 규모별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는데, 사업장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건강진단 대상인원(약 130만명(노동패널 조사 기준)) 및 사업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 규모별 적용 기준은 **단위사업장**으로 합니다. “단위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개념에 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 다만,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사업소, 분소 등과 같이 규모가 작고 사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적용토록 합니다.

Q15)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5인미만 적용 관련 질의

- 야간근로자 특수검진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는 3차년도에는 1-50인 고용 사업장까지 확대가 되는데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소속 근로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 ☞ 특수건강진단은 규모와 상관없이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기존 특수건강진단에서 대상유해인자가 추가된 것으로 2016.1.1일 이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면 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1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수건강진단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특검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견 근로자>

Q16) 파견근로자에 대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사업주 책임 관련 질의

- 파견근로자의 경우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사용사업주 또는 파견사업주 중 누가 실시해야 하나요?

☞ 파견법 제35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은 사용사업주가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사용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검사항목>

- 야간작업 관련 주요 건강문제인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소화기 질환, 유방암을 대상질환으로 하고, 각 질환별로 구체적인 검사항목을 설정
- 질환별 검사항목은 1차 및 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하고, 2차 검사는 1차 검사 결과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실시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신경계: 불면증 증상 문진 ②심혈관계: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u>트리글리세라이드, HDL콜레스테롤</u> ③위장관계: 관련 증상 문진 ④내분비계: 관련 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신경계: 심층면담 및 문진 ②심혈관계: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24시간 심전도, 24시간 혈압 ③위장관계: 위내시경 ④내분비계: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 밑줄친 부분은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항목임

Q17)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관련 질의①

- 특수검진 항목: 혈액검사 등 구체적으로 명시(병원에서 요구함)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검사 항목은 무엇인가요?
- 야간작업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시 진단항목은 무엇인가요?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질환 및 검사항목은?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은 시행규칙 제100조 제4항, 별표 13(라. 야간작업)과 같습니다.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인 경우 1차 검사항목은 모두 실시하며, 2차 검사는 1차 검사 결과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실시합니다.
- 또한 2차 검사항목 중 '24시간 심전도', '24시간 혈압', '위내시경', '유방촬영' 및 '유방초음파'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고시) 제4조 제2항관련 별표2 참조

Q18)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관련 질의②

-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과 일부 중복되는데 당해연도에 일반건강진단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하지 못했을 경우
- 향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시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검사만 받을 수 있나요?

☞ 일반건강진단과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나, 기실시한 일반건강진단결과를 활용하여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시 나머지 검사항목만을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 혈액검사의 경우 검사시기에 따라 그 결과값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과거 검사결과를 활용하여 그대로 판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일반건강진단과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각각 실시할

경우 해당 검사항목을 모두 실시하여야 합니다.

Q19)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관련 질의③

- 당해연도 국가암검진 중 위암과 유방암 대상인 경우,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에서 위내시경이나 유방초음파를 해야 하나요?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에서 위장관증상과 유방암 의심증상이 있어 위내시경이나 유방촬영 혹은 유방초음파 검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에서 해당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해당 검사를 실시한 경우 특수건강진단에서는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이미 시행된 검사결과를 토대로 특수건강진단의 판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특수건강진단에서 해당 검사의 대상이 되고, 아직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특수건강진단과 국가암검진을 함께 시행하고 국가암검진 결과를 특수건강진단의 판정에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건강진단기관>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실시하여야 함

Q20)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기관 관련 질의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만 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 야간작업자 특수건강진단은 어떤 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나요?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야간작업의 빈도 및 형태, 업무의 내용, 노동강도 등을 포함한 직업력 및 노출력을 조사하고 임상검사 등

을 실시하여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특수건강진단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Q21)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기관 관련 질의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도 기관 검진한계에 포함되나요?
- 특수검진을 받아야 하는 야간작업 근로자가 진단기관내 의사의 검진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검진한계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야간작업은 기존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특수건강진단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특수건강진단 검진한계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야간작업” 특검은 특수건강진단 검진한계에 포함되며,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도입 검토시 사전조사에서 야간작업으로 인해 특검 대상이 증가된다 하더라도 현재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어 일시적으로 검진한계를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건강진단 사후관리>

Q22)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판정 및 사후관리

- 야간작업자 특수건강진단결과 판정은?
- 야간근로자 특수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현행과 같이 정상(A), 질병 요관찰자(C), 질병 유소견자(D)로 구분합니다. 다만, 야간작업에 의한 건강영향은 ‘개인적 요인’과 ‘업무상 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치므로 직업병(C₁,D₁)과 일반질병(C₂,D₂) 구분은 하지 않고 C_N, D_N으로 명명합니다.(야간(Night)작업)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는 기존 특수건강진단과 같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가 야간작업 특성을 반영한 사후관리조치 내용을 작성하면 이를 토대로 사업주는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 사업주는 작업장소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등 사후관리를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만일 해당 조치의 이행이 어려울 때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산업보건의(의사인 보건관리를 포함)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벌칙>

Q23)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위반시 벌칙 관련 질의

- 사업주가 야간작업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 특수검진을 받아야 하는 야간작업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을 받지 않을 경우 벌칙은 무엇인가요?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관련 법 위반시 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미 실시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
-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